

# 간호교육 협의회 결과 보고

◇...1971년 11월 5일 교육부 주최로 개최 되었던 간호교육협의회는 전 회원의 최대 관심사인 간호교육제도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참석자들의 성의있는 의견으로 회원들의 중의를 알게되었다. 여기 수록한 내용은 이 협의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보낸 경과 보고서이다. ....◇

이 보고서는 또한 간호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수록합니다. ....◇

## I. 간호교육협의회 경과보고서

때 : 1971년 11월 5일 2시

곳 : 대한간호협회 회의실

사회 : 전산초 제2부회장

인사말씀 : 홍신영 회장

취지설명 : 사회자

간호전문학교에 관한 조사 연구 .....전시자

간호학교에 관한 조사 연구 .....양인실

토의 및 질의

의견종합

폐 회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장시간 진지한 토의 및 질의가 있었습니다. 토의가 끝난 후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서를 배부하였습니다.

### 질 의 서

우리 나라의 앞으로의 간호교육 제도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실 때 졸업 후 전문직 간호원으로서 일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여건

과 간호원 자신들의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깊이 감안하시어 신중을 기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O표를 하여 주십시오.

질의 응답자 총수 80명 중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간호학교 (61)

전문학교 (2년제) (10)

전문학교 (3년제) (9)

참석자 : 상임이사, 이사, 전국간호교육자, [전국간호학과장 및 기타 관계 각 기관에 근무하는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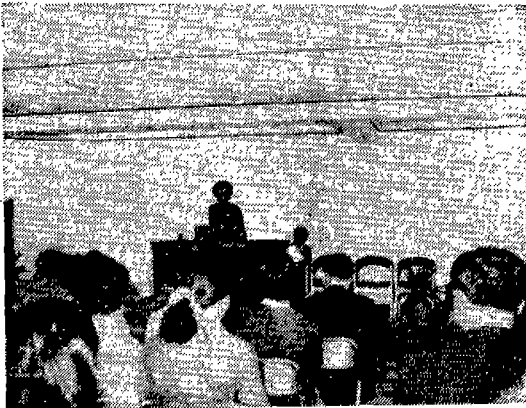
### 참석 학교별 상황

개정 간호학교	경기 간호학교
경북의대 간호학교	경희 간호전문학교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국군 간호학교
극립의료원 간호학교	대구동산 기독병원 간호학교
대전 간호학교	메리놀 간호학교
부산의대 간호학교	서울 간호전문학교
서울의대 간호학과	성물롬반 간호학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우석 간호학교
우석의대 간호학과	위생병원 간호학교
이화대학교 간호대학	적십자 간호학교
제주 간호학교	전남의대 간호학과
전주 간호학교	전주예수병원 간호학교

조선의대 간호학과	정주 간호학교
순천 간호학교	윤해 간호학교
가톨릭의대 간호학과	한양의대 간호학과
불침학교(가나다순)	
대구 간호학교	매봉 간호학교
복음 간호학교	수피아 간호학교
철도 간호학교	

「전문학교에 관한 조사 연구」

베리틀 간호학교 전 시 자



먼저 협회 회장님, 여러 학과장님, 교장선생님, 간호과장님, 그리고 간호계의 각 지도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간호전문학교에 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호학교와 간호전문학교의 학교 체제에 관한 장단점은 이미 1971년 4월호 통권 52호 대한간호협회지에 최상순 선생님의 연구 발표로 자세히 나와 있으며, 또한 여러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저는 오늘 간호학교가 전문학교로 되면 현재의 사회적, 교육적, 지위가 떨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두고 이를 증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같이 간호학교는 문교부의 교육 직제상 각 중 학교에 속해 있으며 대개의 학교가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분명한 소속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교육수준과 단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기타단 속에 간호

학교가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으면서 학력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을지 혹은 간호 전문학교로 되는 것이 간호원의 지위와 수준을 위해 제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우선 현재 간호학교나 간호학교의 학생들이 졸업 뒤에 어떤 배우나 지위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문교 교육법 제149조 3항의 시설 규정에 간호학교는 초급대학에 준한다는 어귀가 있습니다만 실지 받는 배우란 초급대학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문교부 경력 평정 시행 규칙 1969년 8월 4일 총리령 75호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위 및 학력증, 간호계 학교는, 고등학교 난의 아래 들어 있습니다. 또 일선에서는 양호교사가 초급대학 졸업자인 평교사보다 호봉이 낮으며,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학교 졸업자는 대학 편입이 힘들고, 교수자격 취득이 힘든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아 간호학교가 초급대학의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일이겠습니다.

물론,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두고 비교해서 어느편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가리기는 힘든 일이겠습니다만 “초급대학이 전문학교보다 사회적·교육적 지위가 훨씬 높다”는 가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간호학교가 초급대학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간호학교가 전문학교로 된다고 해서 “초급대학이 전문학교로 되면 지위가 떨어진다”는 가설과 같이 간호학교의 지위가 떨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보기 모이신 선생님들께서는 간호학교가 전문학교로 되면 이때까지는 간호원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 속에 있다가 이제는 위생사, 임상병리사 등과 같이 의료보조원 속에 속해지므로 간호원의 지위가 낮아진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간호원이 의사나 치과의사 등과 같이 의료인의 Group에 속해 있었다고 해서 과연 그들과 같은 사회적 배우나 지위를 받고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간호원이 임상병리사, 위생사 등과 같은 계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간호원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간호원이 계속 양성되고 또 이런 간호원이 진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한은 어떤 계열 속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간호원의 지위는 엄연할 것입니다.

한편 X-ray 기사, 병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의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도 얼마 안되는 역사에 벌써 초급대학의 인정과 함께 대우를 받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끈질긴 학력 인정 여망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교부 내의 정식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는 한군데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던지 간에 사회적 인정이나 정부의 인정은 별반 그들 Technicians 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는 그들이 Technicians 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직접 다루는 Professional 한 간호원과는 근본적으로 틀린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Technique 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어디다 두고 있는 것일까요? 간호원이 하는 주사나, 행하는 아침 간호, 시술, 의사의 보조 등은 과연 Technique 한 것은 아닙니까?

이상의 모든 문제점들을 두고서라도 간호학교가 학력 인정만 받으면 전문학교가 되는 것보다 역시 나은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현재 간호학교가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생각하고 이의 해결책을 학력 인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가 병원에 예속되어 있고 두터한 교육 과정이 설정되어 실습 시간이 병원의 인력 수급의 목표를 걸하고, 학생들은 과중한 시간의 실습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수가 많으며, 수업은 제한된 수업 일수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입식으로 강행되고, 따라서, 연구 분위기가 무자라는점 등의 여러 문제들을 생각할 때 이를 그대로 두고 하나씩 고쳐 나가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문학교라는 체제가 생겼다고 할 때 전간호교육자들은 연구와 과학적인 재료를 토대르 현재 우리가 망연하고 있는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이 높은 간호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교육 과정과 목표를 구상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관철시키도록 힘을 모아 노력함이 더 현명하리라 믿습니다.

전문학교가 된다고해서 간호학교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교법전의 시설 기준령, 교원수 등을 들어보아도 알 수 있겠습니다.

문교법전에서 정하는 전문학교의 시설 기준령은 대체로 간호학교에 준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정해진 전문학교의 규정을 간호학교와 비교해 보면;

	전문학교	간호학교
간호학 전 공	교장의 2학년까지 매 학급당 5명	교장의 1학년 마다 2명
전 일 사	매 1학년 증가마 다 2명씩	
사 무 적 원	학생 200인까지 5명	학생 120인 이하 3명
	100인 증가시마다 1명	매 120인 초과마다 1명
시 실	체육장 9, 600m <sup>2</sup>	학생 120인까지 1650m <sup>2</sup> 120인 초과 1인마 다 6. 6m <sup>2</sup>

등으로 되어 있어 간호학교가 전문학교가 되면 간호학교보다 질이 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올

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학교가 교육제도 내의 정규 계열에 서게되고 우리들의 당연한 주장인 학력 인정을 받게되며, 학교는 보다 많은 인원의 교수와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의 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만들수 있는 문교부 제도상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는 간호전문학교로 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간호학교 제도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논의」

청주 간호학교장 양 인 실



1)

간호학교 제도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논의

제 말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귀한 모임을 주선하여 주신 간호협회 여러분과 여기에 참석하여 간호 교육 제도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함께 열거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간호 교육이 그 역사에 비하여 발전이 더딘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간호 교육에 몸 담고 있는 저희들이 교육제도적인 면 즉, 법적인 절차 등에 관심이 적고 누가 해주겠지 하는 의태심이 오늘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너오게 한 듯 합니다.

학교제도의 개편이 있으려면 먼저 그에 대한

논의가 다방면에 걸쳐 선행되고 이 논의의 결과로서 합의점을 찾고 법적인 명문화가 이루어져야 할때에 우리 간호교육사를 보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미흡했고 따라서 명문화가 늦게 됐던 것입니다.

1958년 국립의료원 간호학교를 필두로 1962년 모든 간호고등기술학교가 초급대학 과정의 간호학교로 승격되었지만 그 규정이 1965년에야 만들어진 것은 그 좋은 보기입니다.

이 논의를 통하여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합의의 제기가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보람이겠습니다.

2)

1. 간호학교가 전문학교로 선뜻 찬성 못하는 이유

간호전문학교로 바꾸자고 하시는 분들의 개편 취지는 첫째 각종 학교에서 빠져 정규 계열로 들어온다. 둘째 간호전문학교에서 등재 학과에 진출할 수 있다. 셋째 교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넷째 보건의료계 전문학교로 만들으로써 교세를 키울 수 있다고 들고 있습니다. 전문학교로 개편의 취지는 위와 같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법상 3년제 간호전문학교를 위한 규정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교육법 제128조 7항을 보면 “전문학교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학교는 수업년한을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간호 학교는 그 대상 학생이 대부분 여성이란 점과 그 기간이 3년이란 점을 감안하여 2년제 전문학교와 시설이나 교수자격 교수대우 등에서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방향으로 교육법의 개편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간호전문학교의 교수의 대우는 간호학교 교수보다 낮으며 학교장의 기본 호봉도 간호전문학교는 간호학교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이렇고서도 간호전문학교가 간호학교로부터 결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둘째 동계 학과에 토의 진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제128조 9항을 보면 “전문학교의 졸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고시를 거쳐 동계 대학에(해당 학과에 한한다)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호학교 제학생 및 졸업생의 4년제 대학 편입학의 문제는 대학입학예비고사 제도가 설치된 이후 더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1969년).

### 3)

그 전까지는 간호학교 졸업생이 일반대학에 편입이 용이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간호학 이외 학사나 석사증을 취득하신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간호학과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간호교육 과정은 고등교육기관으로(고등학교 졸업자 입학) 2년제 초급대학 및 3년제 간호학교 4년제 학사 과정이 있는데 1968년 현재 간호학사 과정을 마친 졸업생의 23퍼센트는 등록 간호원 졸업생이고(2년제 또는 3년제 간호학교 졸업생) 2년제 간호초급대학 졸업생의 10퍼센트가 졸업후 1년 이내에 학사과정에 등록하고 있으며 그 중 8퍼센트는 간호학 학사과정을, 2퍼센트는 다른 전공 학사과정으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간호학교 졸업생이 동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것은 문교부 행정상 문제에서 보다는 대학 간호학과 자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법 시행령 69조를 보면 “학생의 입학·퇴학·전학·편입학 및 휴학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학교장이 허가한다”고 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문교부에서 법적으로 전문학교 졸업생이 동계 상급학교의 진학의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해당 간호대학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어쩔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한국 간호계의 발전을 위해서 간호대학은 지금과 같이 하급 간호교육 기관의 졸업생에게 진학의 문을 대책하여야만 되느냐구요?

※전산초 “배학과정 간호교육의 최근 경향” 대한간호 통권 45호, 70년 2월 페이지 25-32

### 4)

1970년 문교부 주최 “간호교사 강습회”에서 어떤 간호대학 출신 한 사람이 “간호학교 교수나 수간호원은 학과 출신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의한바 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지방간호학교의 교수로 오겠다는 간호대학 출신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청주간호학교에 7년간 있는 동안 매년 지는 교수 초빙을 위해서 서울시내 간호대학을 방문했고 동료 교수들을 통해서 구해도 보았으나 다만 아직까지 전 T.O.를 채우고 있지 못 한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간호교육 연맹에서 인정하는 간호학교나 인정하지 않는 간호학교를 불문하고 모두 상급 학교의 진학이 가능 하답니다.

우리나라도 간호대학에서 받아만 준다면 간호학교 졸업생이나 간호전문학교 졸업생이나 다같이 진학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셋째 교수 자격

간호학교는 간호학교 규정 제1조에서 분명히 “초급대학과정”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학교 교원의 자격 기준은 초급대학 교원의 자격 기준에 준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동 규정 6조 3항) 청주 간호학교의 경우 1969년까지는 본교

졸업생이 3년의 조교생활을 마치고 그대로 전임 강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간호전문학교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동안 인정하던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학교 졸업생은 조교 생활 3년이 지나고도 교수자격 심의위 원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거기에 합격해야 전임강사 발령이 나고 간호 전문학교는 교수 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전임강사 발령이 난다 합니다. 아직 법 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낭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마땅히 개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

네째 간호학교가 보건의료계 전문학교로 개편됨에 따르는 문제 일부 사립 간호학교는 간호전문학교로 개편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전문학교로의 전환을 다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교부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보건의료계 전문학교” 교육과정 (원안)을 간호협회 교육 분과위원회에 의뢰하고 이미 그 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 의하면 보건의료계 전문학교 내에 위생과와 임상병리과와 간호과를 두고 있습니다.

위생과와 임상병리과는 2년으로 하고 간호과는 3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의료계 전문학교는 현재 2년제 의료초급대학과 같은 수준이 되고 그 졸업생은 의료보조원

이 되게 됩니다.

현재 간호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원과 함께 의료업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2조) 위생시험사, 임상병리사는 엑스선사, 불리, 요법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와 함께 의료보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조원법 시행령1조)

의료업자는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본야가 있는데 비하여 의료보조원은 의사의 지시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보조원법 3조)

의료보조원을 주로 양성하는 보건의료계 전문학교에서 나와 간호원의 위치가 과연 어떻게 될까? 간호전문학교는 그 위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의료보조원으로 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6)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여러과를 함께 갖고 다량 졸업생을 내는것이 좋지만 꼭 그렇게 해야 간호교육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 일까요. 지금과 같이 간호학교로써 그 특성을 살리면서 그 발전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섯째 간호학교와 간호전문학교의 교과과정의 차이점

간호학교와 간호전문학교의 교과과정 비교

구 분	간호학교(부령안)	간호전문학교(문교부안)	비 고
교 육 목 적	간호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 및 간호기술을 교수 연구하여 장차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간호업무에 종사 할 직업인 기술자 또는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이 수 학 년	3년	3년	
총 이 수 시 간	3,856시간	3,200시간	

교양 과정 총 시간	464시간	304--560시간	
전공 과목 총 시간	3,392시간	2,624--2,880시간	
전공이론 데 실습시간	약 1대 1.7	1대 1.4	
성 적 표 시	학점제	단위제	대학은 학점제
임 상 간 호 실 습	종합병원에서 해야함	꼭 종합병원에서 해야한다는 규 정 없음	
교 과 과 정 구 성	교양 과정과 전용 과정으로 나누 고 모두 필수	교양 과정과 필수 과정으로 나누 고 각각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	

7)

간호학교 간호전문학교 교과과정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호전문학교를 위한 교과과정의 구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구성하고 논의하고 합의의 단계를 거쳐 인체되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학교는 지방학교 이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한번도 이 교과 과정(안)에 대한 검토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두 학교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문제점만 든다면

#### 1) 성적 표시

간호학교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점제인데 전문학교는 1주일간 시간을 표시하는 단위제입니다.

따라서 전문학교는 학사 편입을 할 때 전문학교의 성적인정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전문학교로 개편하는 중요한 명분의 하나로 학사과정 진학을 들고 있지만 단위제 표시는 학사과정 진학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봅니다.

#### 2) 임상실습

전문학교는 간호학교보다 실습시간이 600여 시간 적습니다(대강추산). 간호학교는 종합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전문학교는 그러한 조항이 없으며 전문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의 비율이 분명치 않은 학과 (기초간호 및

실습정신과 간호 및 실습 등)가 있어 실습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3) 간호학교 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이 모두 필수인데 비하여 전문학교는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에 각각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을 두어 교과과정에 각각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을 두어 교과과정 응용에 융통성을 둔 것 같습니다.

8)

그러나 전공선택에 해부생리, 미생물, 병리, 약리가 들어 있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수가 없으면 위와 같은 간호학의 기초과학을 교과과정에서 제외시켜도 된다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겠습니다.

9)

#### 결론 및 제언

1. 간호교육자가 학교제도 및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그 발전에 참여해야겠습니다.

2. 학교제도의 개편에는 충분한 논의-합의-법문화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야 하겠습니다.

3. 간호전문학교는 기계나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종래의 고등전문학교나 전문학교와 달리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2년제 의료 보조원 양성의 기관이 아니고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므로 이수해야 할 보다 넓고 깊은 학문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그 교육 과정도 다른 전문학교와 달리 3년이므로 이에 맞게 법적인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졸업생의 대우, 학사과정 편입학 교수대우 등)

6. 간호전문학교 교과 과정을 보면 성적 표시가 단위제인데 이는 대학의 학점제와 달라서 학사과정 진출에 곤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7. 간호학교가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없었던 것은 간호학교가 각 종 학교이거나 학력인증을 못 받아서 보다는 간호대학의 교육자들이 받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학교로 개편된다 하더라도 간호대학에서, 받아주지 않는한 학사 편입은 곤란할 것입니다.

10)

8. 간호전문 학교가 보건의료 전문학교로 확대된다고 좋아하기전에 전문학교 졸업 간호원이 같은 학교를 졸업한 위생사, 병리사와 함께 보조의료원으로 전략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9.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간호전문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꼭 좋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10. 앞으로 전문학교 규정이 제정될때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중의를 모으고 논의가 끊이지 않아야겠습니다.

11. 문교부 당국이 대학 예비고사 제도를 간호학교에도 적용시키지 않은 이유는 간호원 수급계획상 간호학교 정원을 대폭 늘렸는데 예비고사 제도를 적용시킨다면 정원 미달에 고민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비고사 제도가 간호학교에는 적용시키지 않고 간호학과에는 적용시킴으로써 졸업생의 학사과정 진학의 문이 막히는 법적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예능

체육과와 마찬가지로 간호학교에도 대학 예비고사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으려던 간호학과에도 적용시키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2) 간호학과 입학에 예비고사를 치루게 하려던 간호학교에도 대학 예비고사 제도를 적용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두 방안중 첫째 것은 간호학교에서 우선 찬성하지 않을 것 같고, 예비고사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은 오늘날 간호학교는 그 전보다 사회의 인식이 낮아진게 사실입니다.

11)

따라서 두번째 방안을 채택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간호학교 입학 희망자가 예비고사에 합격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 예비고사 제도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즉 예비고사 합격자는 전공분야 별트 예를 들면 공학부문·농학부문·간호학부문으로 나누어 결정한다면 정원 미달의 고민도 해소되리라고 믿읍니다.

<참고자료>

간호학교와 간호전문학교의 교과과정표 비교

	간호 학교		간호전문학교			
	필수과목	학점수	필수과목	단위수	선택과목	단위수
교	국 어	2	국민윤리	4	국 어	4-6
	영 어	9	체 육	4	철학개론	2-4
	사회학	2			문화사	2-4
양	심리학	2			자연과학개론	4-8
	생 물	2.5			외국어	4-14
	화 학	2			기 타	0-16
과	철학개론	2				
	문화사	1				
	교육학	2				
정	체 육	1.5				
	음 악	1				
	계	27		8		11-27



	간 호 학 교			전 문 학 교	
	필수 과목	강의 점	실습 점	전문필수	단위수
전	간 호 윤 리	1	2	기초간호 및 기술과간호	15-25
	간 호 사	2		내실 및 실습	30-45
	해부생리학	10	2	신소아과간호 및 실습	20-30
	미생물학	4	0.5	정신과간호 및 실습	10-20
	약리학	3	0.5	보건간호 및 실습	15-20
	병리학	3	0.5		
	의료간호학	6	4	전공필수이수 총계	98-126
	내과학 및 내과 외과학 및 외과 간호학	8	5	전문선택	단위수
	소아과학 및 소 아간호학	6	4	해부 및 생리	8-12
	신부인과 간호학	6	4	미생물	5-8
방	간과약	1	0.5	병리	5-8
	영양식이학	2	1	임상심리	4-8
	이비후인과학	1	0.5	의사소통	4-8
	디부비노기과학	4	1.5	영양 및 식이	5-8
	정신과학 및 간 호학	1		보건통계	2-4
	보건교육	2		환자교육	2-4
	보건행정	1		간호사회	1 2-4
	물리요법	1		간호사회	2 12-15
	치과학	1		기타 과목	0-10
	직업조정	1			
정	간호행정	2	1		
	보건간호학	3	1.5		
	전공과정제	79	31	전문선택이수 계	66-82
총교육과정	105.5	31.05			164-180

비고 1. 여기 실린 간호학교 교과과정표는 문교부령안이고 간호전문학교 것은 문교부 고건의특제전문학교 교과과정(선안)입니다.

#### IV. 참고 자료

#### <문교법령중 간호학교 및 전문학교 조항 발취>

##### 제5장 교육 기관

##### 제1절 학 교

제81조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사회적신

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2. 교육대학, 사범대학.
3.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개정 1970.1.1 법 2175)
4.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

제85조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감독청이 인가한다. (개정 1963.11.1 법 1435, 1968.11.15 법 2045, 1970.1.1 법 2175) 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또한 같다.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학교의 설립, 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제125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제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교육과를 직업제대학(4년제에 한한다)에 둘 수 있다. (신설 1963.11.1 법 1435) (개정 1968.11.15 법 2045)

제128조 교육대학은 국립 또는 공립에 한한다. (개정 1963.8.7 법 1387)

##### 제11절 각종학교

제149조 각종학교라 함은 제81조 제1호내지 제7호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1963.11.1 법 1435)

각종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 간호학교규절

(1967.7.19 문교부령 제21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학교중 초급대학과정의 간호학교의 설립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간호학교는 간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 및 간호 기술을 교수연구하며, 장차,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업연한) 간호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5) 제4조(입학자격) 간호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